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6. 15

다. 상 정 일 자 : 2005. 7. 4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나. 제안사유

- 재난·재해에 관한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회계공무원 변경

- 기존 기금운용관인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인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구성

- 기존 위원회 부위원장인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간사인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기존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업무 일부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 부서장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로서 당연 개정 사항임.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불 입 :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제10조 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재난방재담당”은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기금운용관 : <u>건설과장</u></p> <p>2.기금출납원 : <u>재난방재담당</u></p> <p>②(생략)</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①-②(생략)</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과장</u>이 된다.</p> <p>④(생략)</p> <p>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재난방재담당</u>이 된다.</p>	<p>제9조(회계공무원) ①.....</p> <p>.....</p> <p>.....</p> <p>1.기금운용관 : <u>재난안전관리과장</u></p> <p>2.기금출납원 : <u>재난관리담당</u></p> <p>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u>재난안전관리과장</u>.....</p> <p>④(현행과 같음)</p> <p>⑤.....</p> <p>.....<u>재난관리담당</u>.....</p> <p>.....</p>